

第258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1 號

國會事務處

2006年3月2日(木) 午後 3時30分

議事日程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
3.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4.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국정평가기본법안
7.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0.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13.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
16.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
17. 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18.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19. 軍務員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2.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2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6. 韓國地方行政研究院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27.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8.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29. 射倂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30.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34.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0.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42.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43.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45.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47.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4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地下水法 일부개정법률안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5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56.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7.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8.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59.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
60.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附議된案件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5
2. 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5
3.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5
4.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5
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5
6. 국정평가기본법안(정부 제출) 7
7.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7
8.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7
9.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김태홍·

- 남경필 · 문병호 · 문석호 · 박명광 · 신국환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이영호 · 이해봉 · 이해
 훈 · 조경태 의원 발의) 7
10.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 · 박재완 · 박세환 · 엄호성 ·
 이해훈 · 유기준 · 윤건영 · 이성권 · 김애실 · 안홍준 · 최구식 · 김희정 · 김정훈 의원 발의) 7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 · 김문수 · 임태희 · 김재원 ·
 안상수 · 박재완 · 엄호성 · 심재철 · 박세환 · 허천 · 이인기 · 고조홍 의원 발의) 7
12.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 강혜숙 · 박재완 · 서재관 · 심재덕 ·
 안병엽 · 안상수 · 엄호성 · 이시중 · 이재오 · 이해봉 · 최인기 · 황우여 의원 발의) 8
13.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 · 고흥길 · 김정부 · 김종률 · 김태홍 ·
 김한길 · 김효석 · 노현송 · 문석호 · 문학진 · 박계동 · 박영선 · 박재완 · 박종근 · 배기선 · 송영길 ·
 안상수 · 오제세 · 유시민 · 윤건영 · 이계안 · 이상민 · 이해봉 · 이해훈 · 정덕구 · 최경환 · 최인기 ·
 최재성 · 현애자 의원 발의) 9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15.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 · 염동연 · 강창일 · 박기춘 · 김영
 주 · 김동철 · 원혜영 · 우윤근 · 주승용 · 이정일 · 지병문 · 최규식 · 정두언 · 김태홍 · 유인태 ·
 강기정 · 이상열 · 노영민 · 최인기 · 우제항 의원 발의) 10
16.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이성권 · 심재철 · 김충환 · 이해봉 ·
 엄호성 · 김재원 · 이계경 · 김희정 · 박형준 · 이인기 의원 발의) 10
17. 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이성권 · 심재철 · 김충환 · 이해봉 · 엄호성 · 김재원 · 이계경 · 김희정 · 박형준 · 이인기 의원 발
 의) 10
18.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 · 이성권 · 심재철 · 김충환 ·
 이해봉 · 엄호성 · 김재원 · 이계경 · 김희정 · 박형준 · 이인기 의원 발의) 10
19. 軍務員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20.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우윤근 · 김재경 · 양승
 조 · 강창일 · 김영선 · 이원영 · 이은영 · 김선미 · 홍미영 의원 발의) 11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2
22.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2
23.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3
24.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3
2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이해훈 · 신국환 · 이해봉 · 엄호성 ·
 고진화 · 정문헌 · 임인배 · 이윤성 · 조성래 의원 발의) 13
26. 韓國地方行政研究院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 · 강기정 · 김명자 ·
 박상돈 · 백원우 · 변재일 · 양형일 · 우윤근 · 이시중 · 이호웅 · 최재성 · 최철국 의원 발의) 15
27.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 · 염동
 연 · 강창일 · 박기춘 · 김영주 · 김동철 · 원혜영 · 우윤근 · 주승용 · 이정일 · 지병문 · 최규식 ·
 정두언 · 김태홍 · 강기정 · 이상열 · 김효석 · 노영민 · 최인기 · 우제항 의원 발의) 15
28.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29. 射倂行爲等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 · 김태홍 · 이윤성 ·
 박재완 · 엄호성 · 이시중 · 이영호 · 최인기 · 노현송 · 오제세 · 김종률 · 이인기 · 황우여 · 허태
 열 · 백원우 · 이원영 · 문학진 · 이해훈 · 정성호 · 서혜석 · 제종길 · 안병엽 의원 발의) 16
30.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6
3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 · 이용
 희 · 김기춘 · 고흥길 · 이인기 · 유인태 · 최규식 · 김충환 · 박기춘 · 류근찬 · 이명규 · 조성래 ·

우제항 · 심재덕 · 유정복 · 서병수 의원 발의)	16
3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18
34.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3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 · 김태홍 · 백원우 · 최철국 · 최재성 · 이군현 · 강기정 · 이목희 · 엄동연 · 양형일 · 이주호 · 김동철 · 정봉주 · 구노희 · 최순영 · 제종길 · 이인영 · 임태희 · 조배숙 의원 발의)	19
36.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 · 이인영 · 최재성 · 김효석 · 조배숙 · 구노희 · 지병문 · 김영주 · 김홍일 · 이상호 · 오영식 · 이미경 의원 발의)	19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9
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20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40. 體育施設의설치 · 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1
4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 · 조일현 · 우윤근 · 이시중 · 김우남 · 한광원 · 장복심 · 김춘진 · 김태홍 · 안택수 · 유선호 · 엄호성 · 김명주 · 김영덕 · 김광원 · 김낙성 · 박승환 · 한화갑 · 홍문표 · 강기갑 · 서재관 · 안병엽 · 양형일 · 이경재 의원 발의)	22
42.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43.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44.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유필우 · 장향숙 · 안상수 · 이영호 · 이기우 · 심재엽 · 엄호성 · 김원웅 · 정성호 · 김태홍 · 신학용 · 문병호 · 김춘진 · 김선미 · 강기정 · 주승용 · 김덕규 · 김교홍 · 백원우 · 심재덕 · 이상락 · 나경원 · 허태열 · 유시민 · 이근식 · 노웅래 · 박찬숙 · 송영길 · 이윤성 · 신중식 · 제종길 · 박순자 의원 발의)	23
45.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4
4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정부 제출)	24
47.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4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 · 정갑윤 · 김양수 · 박승환 · 김정훈 · 안홍준 · 심재엽 · 이시중 · 김혁규 · 채수찬 · 박형준 · 김재원 · 김명주 의원 발의)	25
4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5
50.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5
5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박명광 · 김정훈 · 우제창 · 김명주 · 김재원 · 이원영 · 김혁규 · 김양수 · 안홍준 · 이광철 · 박재완 · 유승민 · 이혜훈 · 김충환 · 배일도 · 이재오 · 이상경 · 김병호 · 최규성 · 이강두 · 김학송 · 박승환 · 김종률 · 심재엽 · 박찬숙 · 이시중 · 이계안 · 채수찬 · 이근식 · 허태열 의원 발의)	25
52. 地下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 · 김혁규 · 노영민 · 이계안 · 김종률 · 이목희 · 김양수 · 최규성 · 정갑윤 · 김병호 · 최인기 · 우제창 · 채수찬 · 김명주 · 박승환 · 심재엽 의원 발의)	25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채수찬 · 김명주 · 김양수 · 김종률 · 김재원 · 김혁규 · 노영민 · 박기춘 · 박승환 · 심재엽 · 우제창 · 이계안 · 이목희 · 이시중 · 이인기 · 최규성 · 최인기 의원 발의)	26
5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아시아 · 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8
5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 · 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8
56.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8
57.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9
58.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나경원·이진구·권영세·이명규·이계경·김애 실·김정훈·정두언·최구식·이강두·김정권·유승민 의원 발의)	29
59.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30
60.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31

(19시49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안전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되어야 될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사태로 인해서 저녁 늦은 이제야 개의되는 것을 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총 본산인 국회는 경내 100m 이내에서는 데모조차 할 수 없도록 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강제로 점령해 가지고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태, 더군다나 거기에 국회의원뿐 아니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까지 나서 가지고 회의장을 점령해서 전체 국회의 의사 진행이 진행될 수 없도록 마비시키는 사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는 나라가 이러한 예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이런 사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이번 이 사태를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는 결코 이러한 불법적인 사태가 국회의사당 내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계법을 비롯해서 33건의 법안이 법사위가 열릴 수 없는 관계로 오늘 처리해야 될 것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었

습니다. 오늘은 이미 본회의에 송부되어서 온 법안만을 처리합니다.

그 대신 방금 조금 전에 의장과 양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본회의에 온 법안만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이러한 부끄럽고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막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

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 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3.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4.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5.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9시5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

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노회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본 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것이고,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해봉 의원, 박세환 의원, 박찬숙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안한 4건의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 파산 및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사무원, 법무사사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파산자가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장애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에 규정된 존속 상대 폭력범죄인 존속폭행 등을 처벌 대상 범죄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처벌 대상 범죄의 법정형을 세분하였습니다.

셋째, 야간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의 범죄단체 구성·가입 외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죄 교사의 경우 현행은 그 죄에 정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법

정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2인, 기권 9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3인, 기권 8인으로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3인, 반대 9인, 기권 12인으로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정평가기본법안(정부 제출)

(20시0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항 국정평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오제세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국정평가기본법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정평가기본법안은 현재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 체계화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국정평가기본법’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평가대상기관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보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무조정실을 평가대상기관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정평가기본법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국정평가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51인, 반대 59인, 기권 5인으로서 국정평가기본법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김태홍·남경필·문병호·문석호·박명광·신국환·엄호성·오제세·우제창·이영호·이해봉·이혜훈·조경태 의원 발의)

10.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박재완·박세환·엄호성·이혜훈·유기준·윤건영·이성권·김애실·안홍준·최구식·김희정·김정훈 의원 발의)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윤건영·김문수·임태희·김

재원·안상수·박재완·엄호성·심재철·박세환·허천·이인기·고조흥 의원 발의)

12.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박재완·서재관·심재덕·안병엽·안상수·엄호성·이시중·이재오·이해봉·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
(20시0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7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경북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째, 부실관련자 등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였고,

둘째, 예금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김양수 의원, 김효석 의원, 김재경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채권추심 대상채권에 “다른 법령에서 신

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추가하고,

둘째,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받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채무자 본인 외에도 채무자의 관계인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심사 및 구상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채무건 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용배수 한도를 40배로 하향 조정하되, 운용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전대받은 IBRD 차관자금에 대하여서는 모두 상환할 때까지 기본 재산과 합산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담배소매인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대로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 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4인 중 찬성 216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우제창·고홍길·김정부·김종률·김태홍·김한길·김효석·노현송·문석호·문학진·박계동·박영선·박재완·박종근·배기선·송영길·안상수·오제세·유시민·윤건영·이계안·이상민·이해봉·이혜훈·정덕구·최경환·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5.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염동연·강창일·박기춘·김영주·김동철·원혜영·우윤근·주승용·이정일·지병문·최규식·정두언·김태홍·유인태·강기정·이상열·노영민·최인기·우제향 의원 발의)

16.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

17. 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

18.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

(20시1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3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송영길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계양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직 중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개정 규정을 법 시행 후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완 의원과 정부안을 통합한 관세

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첫째,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되 그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둘째, 테러·마약·밀수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세관장이 항공사 및 선박회사에 대하여 승객 예약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며,

셋째, 불요불급한 비관세 감면 축소를 위하여 항공기 항행 안전 장비 관련 물품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세 감면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넷째,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수출 감면세율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을 일반 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에서 전달 마지막 날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과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그리고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관련 각 법률이 사실상 실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폐지하기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린 6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 심사보고서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07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4인으로서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법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조세법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軍務員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

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윤근·김재경·양승조·강창일·김영선·이원영·이은영·김선미·홍미영 의원 발의)

(20시2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9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찬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박찬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박찬석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징계 규정에 맞추어 군무원의 징계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의 항고 제기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 또는 항고 제기기간과 같은 30일 이내로 통일하였으며,

둘째,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항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업 및 공업계열의 학교 명칭을 각각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군기술고등학교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개칭하고, 현재 남자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여자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또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소속을 공군에 두도록 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軍務員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2.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0시3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황진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문수 의원, 김성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동일 제명,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관한 규율은 미흡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율하고,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명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포로의 실태파악과 송환,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섭 및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귀환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억류기간 중

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등록 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포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중식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부실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의 재지정 요건에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때”를 추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해소 및 편의도모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징병전담의사에 대한 신분박탈 사유에서 “부당”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19인, 기권 5인으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4.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혜훈·신국환·이해봉·엄호성·고진화·정문헌·임인배·이윤성·조성래 의원 발의)

(20시4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3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인기 행정자치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병석 의원, 우제향 의원, 정장선 의원, 원혜영 의원, 홍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기부 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율적인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기존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의 충당비율을 현행 100분의 2에서 정부안의 100분의 15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일정한 요건 아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대안)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 체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체포, 대테러 작전 수행, 소방, 인명 구조, 전염병 확산 방지, 산불 진압,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하고,

둘째,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매월 순직유족

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넷째,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서 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제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8인, 기권 7인
으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
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위험직무 관
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행
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韓國地方行政研究院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강기정·김
명자·박상돈·백원우·변재일·양형일·우
윤근·이시중·이호웅·최재성·최철국 의원
발의)

**27.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양형일·염동연·강창일·박기춘·김영주·
김동철·원혜영·우윤근·주승용·이정일·
지병문·최규식·정두언·김태홍·강기정·
이상열·김효석·노영민·최인기·우제항
의원 발의)

28.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4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6항 한국지방행정연
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광
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기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남양주 출신 박기춘 의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니다.

국가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
원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 제명 광주민주화운동 관
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5·18 민
주화 운동의 의미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
였고, 아직도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
금 지급 신청기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에, 제안 취지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
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표를 열
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
사생활 침해나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시
행령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유로서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韓國地方行政研究院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보고서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기권 6인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0인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射倂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서재관 의원 대표발의)(서재관·김태홍·이윤성·박재완·엄호성·이시중·이영호·최인기·노현송·오제세·김종률·이인기·황우여·허태열·백원우·이원영·문학진·

이혜훈·정성호·서혜석·제종길·안병엽 의원 발의)

30.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이용희·김기춘·고홍길·이인기·유인태·최규식·김충환·박기춘·류근찬·이명규·조성래·우제항·심재덕·유정복·서병수 의원 발의)

(20시5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9항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우제항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행행위 영업 및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규제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행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사행행위 영업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행행위 영업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판매,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물 등”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하고, 일부 용어를 정리하여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둘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전기 및 사행성 유기기구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사행행위 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교홍 의원의 대표발의 안과 정부가 제출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의 내용을 종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가 소속장관 등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령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소방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 특히 화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체계가 미흡하였던바, 소방공무원의 질병 보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료체계 마련을 위하여 경찰병원 등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은 종전의 소방법에 의해 적절한 소방시설로 보아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현재의 안전기준에 따라서 설치되지 않아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인 바 이 법 시행 당시 지하구의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 현행법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 부칙의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에 있는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射倂行爲等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34.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시0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조성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조성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조성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현행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둘째, 의무소방원의 부상·질병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을 군 병원 및 일반 병·의원 등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소방원의 결격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로 되어 있는 것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로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체계화한 것으로서 법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둘째, 일정한 지역에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는 바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영업주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려는 것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둘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다중이용업에 대한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업주에 대한 과잉 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업무 처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 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보고서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 존 함)

김효석·조배숙·구논회·지병문·김영주·
김홍일·우상호·오영식·이미경 의원 발의)
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1시10분)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5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교육위원장대리 지병문 교육위원회 지병문 의원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수정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국립대학병원 결산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 결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중복하여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만을 받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둘째,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진흥기금의 사업대상을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까지 확대하고 기금 재원의 다원화 및 기금사업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이 법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8인, 기권 7인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김태홍·백원우·최철국·최재성·이군현·강기정·이목희·염동연·양형일·이주호·김동철·정봉주·구논회·최순영·제종길·이인영·임태희·조배숙 의원 발의)

36.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정봉주·이인영·최재성·

교육위원회는 정봉주 의원, 김선미 의원 및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리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둘째, 급여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 제한 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07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9인, 기권 8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시1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8항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홍창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김낙순 의원과 심재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둘째, 안전진단 수행 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내에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로 확대함으로써 안전진단 대상 기관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오는 3월 26일로 효력이 소멸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되 2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가입자에게 향후 2년 동안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금지규정의 시행 기간을 정부안과 같이 2년 더 연장하되 보조금 수급자격을 정부안보다 6개월이 단축된 1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받은 자로 함으로써 법 적용의 대상 범위를 넓혀 이용자의 권익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12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1시2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0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재홍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성호 의원, 정화원 의원, 김영주 의원, 이명규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

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보호장구의 구비를 의무화했고, 수영장 수질 기준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육성 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재 17개의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體育施設の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조일현·우윤근·이시중·김우남·한광원·장복심·김춘진·김태홍·안택수·유선호·엄호성·김명주·김영덕·김광원·김낙성·박승환·한화갑·홍문표·강기갑·서재관·안병엽·양형일·이경재 의원 발의)

42.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시2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1항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명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金命柱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신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의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과 관련하여 공익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근무기관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안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이 분야에 대한 종사 인력은 심각한 부족 현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수의사의 병역대체와 관련한 세부운용규정에 대하여는 다른 병역대체복무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둘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지원하며,

셋째, 안정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별도의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원안을 수정하여 기관 신설 대신 농림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본 의원과 안병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

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면서, 그러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선박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우수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될 경우에는 그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축

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식품기탁축진에관한법률안(유필우 의원

- 대표발의)(유필우·장항숙·안상수·이영호·이기우·심재엽·엄호성·김원웅·정성호·김태홍·신학용·문병호·김춘진·김선미·강기정·주승용·김덕규·김교홍·백원우·심재덕·이상락·나경원·허태열·유시민·이근식·노웅래·박찬숙·송영길·이운성·신중식·제종길·박순자 의원 발의)

(21시3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4항 식품기탁축진에 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유필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유필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갑 유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탁축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기부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을 식품기탁축진에관한법률안에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안으로 변경하고, 식품제공자와 식품제공사업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규모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부식품을 모집·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였고,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제공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감면 규정을 구체화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상 부실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형사상 책임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식품을 취식하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신고한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으로서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장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4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정부 제출)

47.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시3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5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의사일정 제4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신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경기 성남 중원 출신 신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환경공해 요인인 통풍저해·조망저해를 분쟁조정 대상 환경피해의 유발 범주에 추가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에 건강상·재산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를 추가하며,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으로 신설하고, 국민신탁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신탁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민신탁운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범위를 보전재산의 직접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며,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보건 관리 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확대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산업보건의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고, 기타 법적 근거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심사보고서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정갑윤·김양수·박승환·김정훈·안홍준·심재엽·이시중·김혁규·채수찬·박형준·김재원·김명주 의원 발의)

4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

교통위원장 제출)

50.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

설교통위원장 제출)

5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박명광·김정훈·우제창·김명주·김재원·이원영·김혁규·김양수·안홍준·이광철·박재완·유승민·이혜훈·김충환·배일도·이재오·이상경·김병호·최규성·이강두·김학송·박승환·김종률·심재엽·박찬숙·이시중·이계안·채수찬·이근식·허태열 의원 발의)

52. 地下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

표발의)(이시중·김혁규·노영민·이계안·김종률·이목희·김양수·최규성·정갑윤·김병호·최인기·우제창·채수찬·김명주·

박승환·심재엽 의원 발의)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수찬 의원 대표발의)(채수찬·김명주·김양수·김종률·김재원·김혁규·노영민·박기춘·박승환·심재엽·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시중·이인기·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

(21시4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8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안홍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마산을 출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 합동으로 항공보안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일시 및 점검목적 등을 피조사자에게 일정기간 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보안 현장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건설교통부 항공감독관의 점검에 대하여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택지 공급과정의 투명성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에 따라 택지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널목 개량사업의 대상 도로의 범위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의 범위도 이들 도로의 관리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지도권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 더하여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행정지도 대상에 현행 안전진단 전문기관 외에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를 포함시키며, 안전업무 과약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지하수 개발·이용자,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를 반영하되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반영하되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의 중요성 또는 행정 효율

성 등을 고려하여 의제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심사보고서

地下水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226인, 반대 7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5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 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1시5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4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 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최성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 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엔 ESCAP 산하의 정보통신기술 아·태 훈련센터 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 아·태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하여 공간 및 문서의 불가침, 직접세 면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등 그 법적 지위와 제반 조건을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송도 테크노파크 본부동 건물 3층을 동 센터의 공간으로 점유 사용토록 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 센터의 조직 및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150만 달러씩 총 750만 달러의 기여금을 국제연합에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본 2건의 비준동의안은 2006년 2월 1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 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 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 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2시0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6항 2014년 평창동

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조일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아깝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과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회도 2014년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1인, 기권 1인으로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2시0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7항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안경률** 반갑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안경률 의원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종합박람회의 유치에 실패한 바 있으나 이제 2012년 인정박람회 성격의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 계획을 다시 확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2012년 세계박람회의 우리나라 유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나경원·이진구·권영세·이명규·이계경·김애실·김정훈·정두언·최구식·이강두·김정권·유승민 의원 발의)

(22시0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8항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나경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청구안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전반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 외환은행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등 영업실적이 호전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사실상 대주주라 할 수 있는 정부 당국과 외환은행 최고 경영진의 주도하에 하루아침에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되어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자격도 없고 그 정체도 파악할 수 없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불과한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매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감사청구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이 감사청구안은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지분 매각 사항,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승인결정 사항, 매각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비관적 시나리오하에 추정된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 및 그 추정근거의 적절성 관련 사항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이 감사청구안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대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감사청구안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정책적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정책감사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에 관한 검찰고발 안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채택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질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로서의 자격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므로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외환은행 매각 중지 촉구결의안 역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9.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2시1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9항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허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허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허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는 2005년 1월 철도청이 공사화될 경우 더 이상 철도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있을 수 없게 되자 2004년 9월경 동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청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철도기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철도기술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는 기존의 재단법인 당시 실적과 지적 재산권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탈법 승계한 의혹이 있고 또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지급 명분으로 재단 명의를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50여억 원을 차입하여 이 중 상당부분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기금으로 납입하는 등 탈법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우선 철도공사의 내부감사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즉각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결과 재단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한 임직원의 특별상여금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별도의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은 이에 대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서 동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잔여재산처분의 부적정 등 일련의 탈법 의혹 등에 대해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비리야말로 그동안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앓아오던 고질병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감사원의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모든 사업과정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

(건설교통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22시18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0항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허태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行政體制改編特別委員長 許泰烈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행정 체제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 체제는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행정 환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

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비롯해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당리당략적 입장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시찰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지방행정 제도의 특징과 운영 실태, 개편 사례,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몸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부처의 관계관으로부터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 나타나는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종합한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현재의 다계층·중층 구조로 인한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다층화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도록 한다.

둘째,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생활권 및 경제권의 확대에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와 군의 규모로는 발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 범위가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국토 이용이 어려운 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인구 및 경제권, 개발권과 생활권에 따라서 수개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적정한 규모로 광역화되어 통합된 기존의 시·군·구에는 행정구를 두어서 행정계층을 이층화하고 차제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행정구로 전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군·구 통합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정부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고려한 시·군·구 통합의 기준과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여 통합을 촉진하되, 통합의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는 주민 간의 친근성과 공통적 관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 마을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읍·면·동은 가장 적합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입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계층인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폐지하여 읍·면·동을 행정계층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읍·면·동의 순수 주민에 의한 한정된 자치권만 허용하는 준자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도가 처리해 온 국가위임사무와 현재 각 부처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지방특별관서를 통합해서 현재 도의 영역을 넘는 대권역별로 지방 광역행정 체제를 설치하여 대단위 지역계획과 도로·교통·하천 등 인프라 건설과 관리 등에 지방적인 국가사무를 탈정치적이고 탈지역이기적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 활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의 설치에 계층구조를 슬림화하려는 행정 체제 개편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앙집권의 강화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현재의 국가지방특별관서의 통폐합은 중앙 부처의 구조조정 문제와 연결되므로 행정 체제 개편의 과제와 분리해서 다음 단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 체제 개편 과제는 정부의 전유물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행정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체제 개편 문제는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의 통치구조와 관련되는 국가적 중대사이고,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리적 타당성만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모든 이해관계의 주체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개편안과 개편시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므로 향후 구체적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방안과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새로운 중앙집권화의 시도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설득력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금번 특위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 마련과 함께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무권한의 배분과 지방재정 제도, 통폐합 대상의 기구와 인력의 처리 대책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정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책상에 있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 도출된 개편 방향, 추진 원칙, 향후 과제는 앞으로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는 데 유의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시도를 거듭해 온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작성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여러 의원님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국회 회의장이 강제 점령되어 가지고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다짐을 서로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정갑윤

기권 의원(4인)

공성진 문병호 이계진 이화영

○**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태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12인)

김무성 김영덕 김재원 김정권
 박승환 박형준 안홍준 유기준
 이상배 이인기 정진섭 최경환

기권 의원(9인)

강성종 김춘진 문병호 박상돈
 박찬숙 송영선 이종걸 이화영
 정갑윤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영숙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미경	이병석
이낙연	이명규	이석현	이성구
이상경	이상열	이시종	이영순
이성권	이승희	이은영	이인영
이용희	이원영	이주호	이진구
이재오	이종걸	이혜훈	이호웅
이한구	이해봉	이해규	장경수
임채정	임태희	장윤석	장향숙
장복심	장영달	정문현	정병국
전병헌	정덕구	정의용	정장선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정형근
정종복	정진석	조경태	조배숙
정희수	제종길	주호영	지병문
조성태	주승용	채수찬	최규성
진수희	진영	최성	최순영
최규식	최병국	최재천	최철국
최용규	최재성	허천	현애자
한명숙	한병도	홍창선	황진하
홍미영	홍재형		

반대 의원(13인)

강성종	김무성	김재원	김정훈
박승환	박찬숙	박형준	송영선
유기준	이상배	이인기	정진섭
최경환			

기권 의원(8인)

권경석	김동철	김정권	김춘진
문병호	박상돈	이화영	정갑윤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인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호웅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태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9인)

공성진 김무성 김영덕 김재원
 유기준 이상배 이인기 정진섭
 최경환

기권 의원(12인)

강성종 김정권 김정부 김춘진
 문병호 박상돈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이혜훈 이화영 정갑윤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용
 이화영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배숙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윤건영

기권 의원(3인)

김정부 김종인 박상돈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국정평가기본법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5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선미 김양수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태환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류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59인)

고경화	고조홍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김무성	김석준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재원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희정	나경원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계진	이군현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인기
임해규	정갑윤	정문현	정병국
주호영	진수희	진영	최구식
최병국	허천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고진화	심재철	이상경	정희수
조성태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응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한명숙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류근찬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응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3인)

김용갑 김정훈 문석호

기권 의원(1인)

송영선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조진수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재천	최철국	최용규	최재성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이용희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미경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배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성권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원영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재오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의용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정부 이종걸 정성호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박영선 송영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용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인)

강성종 고조홍 김정훈 송영선

기권 의원(4인)

김교홍 유승민 이상경 이재창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열	이석현	이용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인기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7인)

김정부	나경원	엄호성	윤건영
이상배	이한구	최경환	

기권 의원(6인)

김정권	박찬숙	박형준	이혜훈
정문헌	주호영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재홍 김종률 김태년 김형오 나경원 노회찬 문학진 박계동 박상돈 박재완 박형준 서재관 송영길 신학용 안경률 안영근 오영식 우윤근 유기준 유인태 윤건영 이강래 이계진 이기우 이방호 이상배 이성권 이원영 이인제 이주호 이호웅 임채정 장복심 정갑윤 정봉주 정장선 정청래 조배숙 조정식

김낙순 김명자 김석준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종인 김태홍 김형주 노영민 류근찬 문희춘 박기순 박순자 박종근 배기선 서혜석 송영선 심상정 안명옥 안홍준 오제세 우제창 유기홍 유재건 유두환 이경숙 이광철 이낙연 이병석 이상열 이시종 이윤성 이재오 이진구 이화영 임태희 장윤석 정덕구 정성호 정종복 정희수 조성래 주순미 김선미 김영숙 김우남 김재원 김정부 김춘진 김태환 김호석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박명광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선병렬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우상호 우제항 유선호 유정복 유원호 이경재 이군현 이명규 이상경 이석현 이영순 이은영 이재창 이한구 임인배 장향숙 정문현 정의용 정진석 제종길 조성태 주덕규 김명주 김선미 김영숙 김우남 김재원 김정부 김춘진 김태환 김호석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박명광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선병렬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우상호 우제항 유선호 유정복 유원호 이계안 이근식 이미경 이상득 이성구 이영희 이인영 이종걸 이혜훈 임종수 장경현 정병국 정의화 정진섭 조경태 조일현 지룡 김무성 김성곤 김영주 김원기 김재윤 김정훈 김충환 김현미 김희정 노현송 문석호 민병두 박병석 박영선 박찬숙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우원식 원희룡 유승민 유필우 윤호중 이계안 이근식 이미경 이상득 이성구 이영희 이인영 이종걸 이혜훈 임종수 장경현 정병국 정의화 정진섭 조경태 조일현 지룡

진수희 최구식 최순영 최철국 현애자 황우여

진영 최규성 최용규 한명숙 홍미영 황진하

채수찬 최규식 최재성 한병도 홍재형

최경환 최병국 최재천 허천선 홍창선

기권 의원(2인)
양형일 이인기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갑 강성종 고경화 공성진 권오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재홍 김태년 김형오 나경원 노회찬 문학진 박계동 박상돈 박재완 박형준 서재관 송영길 신학용 안경률 안영근 오영식 우윤근 유기준 유인태 윤건영 이강래 이계진 이기우 이방호 이상배 이성권 이원영 이인제 이주호 이호웅 임채정 장복심 정갑윤 정봉주 정장선 정청래 조배숙 조정식

강기정 강재섭 고조홍 광성문 김교홍 김낙순 김명자 김석준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종인 김태홍 김형주 노영민 류근찬 문희상 박기순 박순자 박종근 배기선 서재관 송영길 신학용 안경률 안홍준 오영식 우윤근 유기준 유인태 윤건영 이강래

강길부 강창일 고진화 권경석 김근태 김덕규 김명주 김선미 김영숙 김우남 김재원 김정부 김춘진 김태환 김호석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박명광 박승환 박찬석 백원우 선병렬 신기남 심상정 안명옥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유기홍 유재건 유두환 이경

강봉균 강혜숙 고홍길 권영길 김기현 김덕룡 김성곤 김영주 김원기 김재윤 김정훈 김충환 김현미 김희정 노현송 문석호 민병두 박병석 박영선 박찬숙 서갑원 선병렬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양형일 우상호 유선호 유정복 유원호 이경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노 회 찬	노 류 근	노 문 호	노 문 석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문 학 진	문 회 희	문 회 상	민 병 두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박 재 완	박 중 근	박 찬 석	박 찬 숙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박 형 준	배 기 선	백 원 우	서 갑 원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이 한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기 남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창 선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황 우 여	황 진 하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기 권 의 원 (1인)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안 상 수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현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

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김 교 홍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검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료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정덕구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강성경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선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황우여	황진하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승환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찬석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원우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석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세창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정갑윤				

○軍務員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중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신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안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세창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인태	유기홍
윤건영	이강래	이계진	
이방호	이상배	이성권	
이용희	이인기	이주호	
이호웅	임채정	장복심	
정갑윤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용 규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허 천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정 훈

기권 의원(1인)

이 한 구

(정형근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221인, 기권 의원 1인임)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배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성 권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구 식
 최 규 성 최 병 국 최 성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창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기권 의원(5인)

권경석 나경원 우제항 이영순
현애자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철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김태홍	김태환	김형오	김형주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박기춘	박병석	박순자	박승환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이혜훈	이호웅	임종인	임채정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정갑윤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의용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반대 의원(3인)

강성종 이종걸 홍창선

기권 의원(7인)

김정부 박영선 박찬숙 송영선
정성호 제종길 진수희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영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전병현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8인)

김재경 김재원 김정부 박상돈
 윤건영 이상배 이종구 최경환

기권 의원(7인)

김현미 송영선 우제창 이시중
 이한구 이해훈 장윤석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중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체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방호	이기우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용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정부 유선호 이한구 최경환

○韓國地方行政研究院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명옥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안영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경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용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허천형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6인)			
김정훈	유인태	이상배	이혜훈
정덕구	최경환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10인)			
김용갑	김정부	김정훈	나경원
송영선	엄호성	이한구	이혜훈
정갑윤	황진하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지병문 진수희 진영채 수찬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한명숙 한병도 허천현 애자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황우여 황진하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반대 의원(1인)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광성문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기권 의원(2인)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김형주 정몽준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채 수찬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현 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광성문

기권 의원(2인)

김형주 정몽준

○射倂行爲等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1인)

장기갑 장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우제창	우제항	우원회	우유기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열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시종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춘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윤성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재오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원회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이병석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상배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성권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기권 의원(2인)

김형오 박형준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춘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회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상배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성권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원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인영	이재오	이주호	이진구
이종걸	이종구	이혜훈	이호웅
이한구	이해봉	임채정	임태희
임인배	임종인	장복심	장윤석
임해규	장경수	정갑윤	정덕구
장향숙	전병헌	정병국	정의용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진석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희수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주호영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채수찬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규식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용규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정 성 호 황 우 여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반대 의원(1인)

김 무 성

기권 의원(3인)

권 오 을 김 재 경 정 성 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중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열	이상득
이상민	이성배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병도
최재천	최철열	한명숙	한병우
허천형	허태표	현애자	홍미영
홍재진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1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열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송영선 양형일 전병현 정몽준
 (최경환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
 원 231인, 반대 의원 없음)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7인)

김영주 김형주 박재완 이상경
 장복심 정성호 제종길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한명숙	한병도	허천형	허태열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반대 의원(7인)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정부	박종근	박찬숙	엄호성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윤건영	임해규	주호영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운	기권 의원(8인)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나경원	신상진	심재철	이종구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이한구	정갑윤	최경환	최철국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운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1인)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5인)

김정부 윤건영 이종구 주호영
 최경환

기권 의원(8인)

권영세 김용갑 박찬숙 송영선
 심재철 이한구 이혜훈 정갑윤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병석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진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기우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9인)

권경석 김재원 김정부 엄호성
 윤건영 이종구 이혜훈 주호영
 최경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기권 의원(8인)

김정권 나경원 박상돈 박찬숙
심재철 이강래 이한구 정갑윤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기권 의원(3인)

김정권 박형준 이한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배기선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안경률	안민석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성진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이정일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채수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인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한병도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반대 의원(20인)

강성종	권선택	김낙순	김영덕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김정부	노회찬	류근찬	박찬숙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박형준	심재엽	유기준	윤건영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영순	이종걸	이한구	이혜훈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주호영	최순영	허천	현애자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기권 의원(12인)

권영길	김정권	백원우	송영선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심상정	심재철	안명옥	양형일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윤두환	이종구	천영세	최경환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體育施設の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	-----	-----	-----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안상호	우원식	우윤근	오제세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원영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김정권 김정부 노회찬 윤건영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재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체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태홍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학송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김효석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노영민
 문병호 문석호 문희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재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 의원(2인)

김정부 허태열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결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종복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고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택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유기준

(안홍준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투표 의원 226인, 찬성 의원 225인임)

○環境紛爭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고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부겸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충환 김학송 김형주 남경필 노회찬 문학진 박근혜 박영선 박찬석 백원우 서혜석 송영선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오영식 우윤근 원희룡 유승민 유필우 윤호중 이계경 이근현 이명규 이상득 이성구 이윙희 이인기 이정일 이진구 이호웅 임태희 장윤석 정두언 정성호 정종복 정형근 조배숙 조정

김명자 김석준 김영숙 김우남 김재원 김정부 김태년 김혁규 김효석 노영민 류근찬 문희석 박병완 박찬숙 서갑원 신기남 심재엽 안병엽 양승조 오제세 유기준 유인태 윤건영 이강래 이계안 이근식 이방호 이성권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한구 임인배 임해규 장향숙 정몽준 정의용 정진석 정희수 주승용

김명주 김성곤 김영주 김원기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희정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박상돈 박종근 박형준 배기선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양형일 우상호 우제항 유기홍 유재건 윤두환 이경숙 이계진 이기우 이병석 이상열 이시종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해봉 임종인 장경수 전병헌 정문헌 정의화 정진섭 제종길 조성태 주호영

김무성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재홍 김춘진 김태환 김형오 나경원 노현송 문석호 민병두 박승환 박진 배기선 서재관 송영길 신학용 안경률 안영근 엄호성 우원식 유선호 유정복 유원호 이경재 이광철 이낙연 이상경 이석현 이영순 이은영 이재창 이주호 이혜훈 임채정 장복심 정갑윤 정병국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조일현 지병문

진수희 최구식 최순영 최재천 허천 홍재형

진영 최규성 최용규 최철국 허태열 홍창선

채수찬 최규식 최인기 한명숙 현애자 황우여

천영세 최병국 최재성 한병도 홍미영 황진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갑 강재섭 고조흥 광성문 권영세 김기현 김덕룡 김무성 김양수 김영춘 김원웅 김재홍 김춘진 김태환 김형오 나경원 노현송 문석호 민병두 박승환 박진 배기선 서재관 송영길 신학용 안경률 안상수 양형일 우상호 우원식 유선호 유정복 유원호 이경재 이광철 이낙연 이상경 이석현 이영순 이은영 이재창 이주호 이혜훈 임채정 장복심 정갑윤 정병국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조일현 지병문

강기정 강창일 고진화 권경석 권오을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충환 김학송 김형주 남경필 노회찬 문희석 박근혜 박영선 박찬석 백원우 서혜석 송영선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오영식 우윤근 원희룡 유승민 유필우 윤호중 이계경 이근현 이명규 이상득 이성구 이윙희 이인기 이정일 이진구 이호웅 임태희 장윤석 정두언 정성호 정종복 정형근 조배숙 조정

강길부 강혜숙 고홍길 권선택 김교홍 김낙순 김명자 김석준 김영숙 김우남 김재원 김정부 김태년 김혁규 김효석 노영민 류근찬 문희석 박병완 박찬숙 서갑원 신기남 심재엽 안민석 안홍준 오영식 우제창 유기준 유인태 윤건영 이강래 이계안 이근식 이방호 이성권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한구 임인배 임해규 장향숙 정몽준 정의용 정진석 정희수 주승용

강봉균 고경화 공성진 권영길 김근태 김덕규 김명주 김성곤 김영주 김원기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현미 김희정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박상돈 박종근 박형준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병엽 양승조 오제세 유기홍 유재건 윤두환 이경숙 이계진 이기우 이병석 이상열 이시종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해봉 임종인 장경수 전병헌 정문헌 정의화 정진섭 제종길 조성태 주호영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민병두	박근혜	박병석	박상돈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황우여	황진하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기권 의원(1인)

정문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연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중길 조정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김영숙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232인, 기권 의원 없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조경태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유필우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상득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황우여	황진하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기권 의원(3인)

김성곤 박형준 제종길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윤건영

기권 의원(4인)
김덕규 김정부 이종구 이혜훈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우원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地下水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재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관 의원(2인)
박진안 민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명규	이방호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성권	이상득	이상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노 응 래	나 현 송	노 회 찬	노 문 병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석	문 회 상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박 근 혜	박 기 준	박 병 석	박 상 돈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중 인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몽 준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기 남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조 경 태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최 경 환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원 희 룡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최 성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최 재 천	한 명 숙	한 병 도	허 천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황 우 여	황 진 하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반대 의원(7인)

권 영 길	노 회 찬	심 상 정	이 영 순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2인)

제 종 길 최 철 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김 교 흥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중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기 현

기권 의원(1인)

이 재 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해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김 교 흥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손 봉 숙	송 영 길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원 회 룡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두 환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호 응	임 인 배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기 현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해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영 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덕구 정두연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종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용래
 노현송 노희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기우 이병석
 이균현 이명규 이방호 이석현
 이명규 이상득 이상열 이영순
 이원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주호
 이한구 임인배 임종인 이해훈
 이한구 임인배 임종인 이해훈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훈
 이호웅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희룡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정병국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한명숙	한병도	허천	허태열	이인영	이재오	이재창	이종걸
현애자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황진하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홍준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반대 의원(2인)

김동철 김현미

기권 의원(7인)

김성곤 안영근 양승조 우윤근
원혜영 이정일 전병헌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덕룡 김무성 김영주 김원기 김재윤 김정훈 김태년 김한길 김형주 남경필 노회찬 문희박 박병석 박재완 박찬숙 백원우 선병렬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양형일 우원식 유기준 유인태 윤두환 이경숙 이계진 이기우 이상경 이석현 이영순 이인기 이정일 이진구 이호웅 임해규 정갑윤 정문의 정진섭 제종길 조성태 주호수 최규
 김동철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김재홍 김종인 김태홍 김혁규 김효석 노영민 문병호 문희상 박상돈 박종근 박형준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심재엽 안병엽 엄호성 우윤근 유기홍 유정복 이경재 이광철 이성구 이영희 이인영 이종걸 이한구 임인배 장경수 정덕구 정병국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지병문 천영규
 김명자 김양수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춘진 김태환 김현미 김희정 노웅래 문석호 박근혜 박승환 박진 배기선 서재관 송영길 신학용 심재철 안상수 오영식 우제항 유선호 이강두 이계경 이근현 이명규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혜봉 임종심 장복순 정두언 정성호 정종복 정형근 조배숙 조진수 최경환
 김명주 김영숙 김우남 김재원 김정부 김충환 김학송 김형오 나경원 노현송 문학진 박기춘 박영선 박찬석 배일도 서혜석 송영선 심상정 안명욱 안홍준 오제세 원희룡 유승민 윤건영 이강래 이계안 이근식 이병석 이시종 이은영 이재창 이주호 이혜훈 장윤석 정몽준 정의용 정진석 정희수 조성래 주승용 영구식 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명숙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강창일
기권 의원(15인)
 강봉균 김낙순 김석준 김성곤
 안영근 양승조 우상호 원혜영
 유재건 이원영 임채정 장향숙
 전병현 최용규 홍창선

○출석 의원(27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우원혜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두연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채 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출장 의원(3인)

김애실 박세환 유승희

○청가 의원(7인)

구논회 권철현 김진표 김홍일
 신국환 유시민 임종석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법무부장관 천정배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농림부장관 박홍수
 환경부장관 이재용
 노동부장관 이상수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국방부차관 황규식
 문화관광부차관 유진룡
 정보통신부차관 노준형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남궁석

【보고사항】

○상임위원장 직무대리 지정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이경숙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3일간)
 위원장직무대리 홍미영
 2006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6일간)
 (2006. 2. 28)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화관광	김재홍	열린우리당	2006. 3. 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김성조	김재원	한나라당	2006. 2. 28
교육	권철현	김성조		
농림해양수산	김재원	권철현		
국회운영	장경수	박기춘	열린우리당	2006. 2. 28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한나라당
 최연희
 (2006. 2. 27)

○의안 제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6. 2. 17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국회의원(최연희) 윤리심사안

(2006. 2. 28 윤원호·이미경·김희선·조배숙·한명숙·강혜숙·김명자·김선미·김영주·김현미·박영선·서혜석·유승희·이경숙·

장복심 · 장향숙 · 홍미영 · 정청래 · 이광철 · 김부겸 · 구논회 · 손봉숙 · 심상정 · 노회찬 · 현애자 의원 발의)

2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

(2006. 2. 28 이계진 · 안상수 · 엄호성 · 이해봉 · 김재경 · 황우여 · 서병수 · 김충환 · 이인기 · 심재덕 · 안경률 · 윤건영 · 정문헌 · 정갑윤 · 박찬숙 · 임해규 · 신상진 · 박세환 · 김재윤 · 신국환 · 이계경 · 나경원 · 김성곤 · 박성범 · 손봉숙 의원 발의)

3월 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檢察廳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6. 2. 28 안상수 · 이윤성 · 배일도 · 엄호성 · 심재철 · 서병수 · 이인기 · 최경환 · 박재완 · 주호영 의원 발의)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00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006. 2. 28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출)

3월 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2. 28 교육위원장 제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

(2006. 2. 28 김태홍 · 유승희 · 김태년 · 박상돈 · 최규성 · 한병도 · 배기선 · 김교홍 · 최철국 · 오영식 · 서갑원 의원 발의)

3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寄附金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6. 2. 28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船舶安全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2. 28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회의원(최연희) 윤리심사안

(2006. 2. 28 주호영 · 김재경 · 김충환 · 이인기 · 서병수 의원 요구)

○의안 심사

辯護士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

의)

(2005. 9. 27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5. 12. 6 나경원 · 이진구 · 권영세 · 이명규 · 이계경 · 김애실 · 김정훈 · 정두언 · 최구식 · 이강두 · 김정권 · 유승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국정평가기본법안

(2005. 5. 6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정무위원장 보고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5. 11. 4 신학용 · 김태홍 · 남경필 · 문병호 · 문석호 · 박명광 · 신국환 · 엄호성 · 오제세 · 우제창 · 이영호 · 이해봉 · 이혜훈 · 조경태 의원 발의)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4 김양수 · 박재완 · 박세환 · 엄호성 · 이혜훈 · 유기준 · 윤건영 · 이성권 · 김애실 · 안홍준 · 최구식 · 김희정 · 김정훈 의원 발의)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0 양형일 · 염동연 · 강창일 · 박기춘 · 김영주 · 김동철 · 원혜영 · 우윤근 · 주승용 · 이정일 · 지병문 · 최규식 · 정두언 · 김태홍 · 유인태 · 강기정 · 이상열 · 노영민 · 최인기 · 우제항 의원 발의)

在外公館公務員의租稅의源泉徵收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6. 9 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
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
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

臨時租稅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6. 9 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
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
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

租稅犯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5. 6. 9 김석준·이성권·심재철·김충환·
이해봉·엄호성·김재원·이계경·김희정·
박형준·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담배事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4 박상돈·강혜숙·박재완·서재관·
심재덕·안병엽·안상수·엄호성·이시중·
이재오·이해봉·최인기·황우여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윤건영·김문수·임태희·김재원·
안상수·박재완·엄호성·심재철·박세환·
허천·이인기·고조홍 의원 발의)

稅務士法 一部改正法律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5. 3. 3 우제창·고홍길·김정부·김중률·
김태홍·김한길·김효석·노현송·문석호·
문학진·박계동·박영선·박재완·박종근·
배기선·송영길·안상수·오제세·유시민·
윤건영·이계안·이상민·이해봉·이혜훈·
정덕구·최경환·최인기·최재성·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9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6. 2. 8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2. 9 정성호·우윤근·김재경·양승조·
강창일·김영선·이원영·이은영·김선미·
홍미영 의원 발의)

軍務員人事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16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國軍捕虜待遇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2005. 6. 23 김문수·김기춘·김애실·김영숙·
김재원·김정부·박계동·박성범·박세환·
박승환·배일도·송영선·엄호성·이상배·
이성권·이재오·정문헌·정의화·최구식·
최병국·홍준표 의원 발의)

國軍捕虜待遇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5. 6. 27 황진하·유기준·이해봉·김용갑·
김재원·정문헌·최구식·유승민·조성태·
김영선·허천·이강두·이계진·신상진·
심재철·이혜훈·안상수·한선교·박재완 의원 발의)

國軍捕虜待遇등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 김성곤·김명자·김재홍·노웅래·
박찬석·선병렬·안상수·염동연·우윤근·
유선호·정장선·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국방위원장 보고

小河川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2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韓國地方行政研究院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9 우제창·강기정·김명자·박상돈·
백원우·변재일·양형일·우윤근·이시중·
이호웅·최재성·최철국 의원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05. 12. 26 정부 제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5. 5. 9 안상수·이혜훈·신국환·이해봉·
엄호성·고진화·정문헌·임인배·이윤성·
조성래 의원 발의)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關한法律 일부개

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0 양형일 · 염동연 · 강창일 · 박기춘 · 김영주 · 김동철 · 원혜영 · 우윤근 · 주승용 · 이정일 · 지병문 · 최규식 · 정두언 · 김태홍 · 강기정 · 이상열 · 김효석 · 노영민 · 최인기 · 우제항 의원 발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1. 8 정진석 · 이용희 · 김기춘 · 고흥길 · 이인기 · 유인태 · 최규식 · 김충환 · 박기춘 · 류근찬 · 이명규 · 조성래 · 우제항 · 심재덕 · 유정복 · 서병수 의원 발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1 정부 제출)

射倂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2005. 5. 3 서재관 · 김태홍 · 이윤성 · 박재완 · 엄호성 · 이시중 · 이영호 · 최인기 · 노현송 · 오제세 · 김종률 · 이인기 · 황우여 · 허태열 · 백원우 · 이원영 · 문학진 · 이혜훈 · 정성호 · 서혜석 · 제종길 · 안병엽 의원 발의)

住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8. 19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5. 9. 5 김교홍 · 이시중 · 정봉주 · 황우여 · 최재성 · 박계동 · 노현송 · 송영길 · 우제창 · 이혜봉 · 김한길 · 배일도 · 엄호성 · 이영호 · 강창일 · 박찬숙 · 박기춘 · 안상수 · 고조홍 · 심재철 · 한광원 · 김태년 · 서재관 · 김우남 · 김혁규 · 신학용 · 정성호 · 최인기 · 이계진 · 이윤성 · 김종률 · 신상진 · 허태열 · 제종길 · 박상돈 · 이광철 의원 발의)

消防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1 정부 제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5. 10. 5 정부 제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0 이인기 · 김석준 · 이성권 · 김충환 · 광성문 · 신상진 · 유기준 · 정희수 · 양형일 · 정병국 · 이윤성 · 엄호성 · 안상수 · 심재덕 · 배일도 · 김애실 의원 발의)

寄附金品募集規制法中改正法律案(이병석 의원 대

표발의)

(2004. 9. 6 이병석 · 김재원 · 박재완 · 현애자 · 박세환 · 전여옥 · 양형일 · 남경필 · 신중식 · 이상득 · 장복심 · 이인기 · 이규택 · 임인배 · 이상열 · 안경률 · 안명옥 · 주성영 · 김덕규 · 이경제 · 김애실 · 엄호성 · 최인기 · 정종복 · 황우여 · 김재윤 · 정병국 의원 발의)

寄附金品募集規制法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9 우제항 · 강창일 · 홍미영 · 최재성 · 박기춘 · 백원우 · 심재덕 · 우제창 · 변재일 · 권오을 · 양형일 · 원혜영 · 정봉주 · 노현송 · 장경수 · 이해봉 · 광성문 의원 발의)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5. 26 정부 제출)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5. 8. 22 정장선 · 강성중 · 김교홍 · 김성곤 · 김재홍 · 노영민 · 박상돈 · 조경태 · 안홍준 · 이상배 · 이호웅 · 유필우 의원 발의)

寄附金品募集規制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4 원혜영 · 강혜숙 · 강창일 · 유인태 · 최규성 · 양형일 · 박기춘 · 문학진 · 장영달 · 김태홍 · 이호웅 · 이인영 · 이강래 · 이목희 의원 발의)

寄附金品募集規制法 폐지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홍미영 · 김태홍 · 강혜숙 · 엄호성 · 이계경 · 조성래 · 배일도 · 심재덕 · 김태년 · 유승희 · 이광철 · 문학진 · 이경숙 · 제종길 · 임종석 · 민병두 · 김한길 · 강창일 · 안민석 · 김희선 · 박계동 의원 발의)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8 지병문 · 김태홍 · 백원우 · 최철국 · 최재성 · 이군현 · 강기정 · 이목희 · 염동연 · 양형일 · 이주호 · 김동철 · 정봉주 · 구노희 · 최순영 · 제종길 · 이인영 · 임태희 · 조배숙 의원 발의)

韓國私學振興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6 정봉주·이인영·최재성·김효석·조배숙·구논회·지병문·김영주·김홍일·우상호·오영식·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5. 6. 2 정봉주·구논회·최재성·김태년·이상경·지병문·김태홍·배기선·장경수·강기정·김재홍·김효석·주승용·유기홍·이광철·이인영·조배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

(2005. 8. 16 김선미·이해봉·이호웅·우제항·한광원·안영근·장향숙·박영선·구논회·정성호·문병호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12 정부 제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발의)

(2005. 9. 27 이군현 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교육위원장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31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공익수익사에 관한 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

(2005. 6. 1 신중식·조일현·우윤근·이시종·김우남·한광원·장복심·김춘진·김태홍·안택수·유선호·엄호성·김명주·김영덕·김광원·김낙성·박승환·한화갑·홍문표·강기갑·서재관·안병엽·양형일·이경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8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식품기타촉진에관한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2004. 11. 2 유필우·장향숙·안상수·이영호·이기우·심재엽·엄호성·김원웅·정성호·김태홍·신학용·문병호·김춘진·김선미·강기정·주승용·김덕규·김교홍·백원우·

심재덕·이상락·나경원·허태열·유시민·이근식·노용래·박찬숙·송영길·이윤성·신중식·제종길·박순자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産業安全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2 정부 제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2005. 5.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05. 7. 19 정갑윤·박명광·김정훈·우제창·김명주·김재원·이원영·김혁규·김양수·안홍준·이광철·박재완·유승민·이혜훈·김충환·배일도·이재오·이상경·김병호·최규성·이강두·김학송·박승환·김종률·심재엽·박찬숙·이시종·이계안·채수찬·이근식·허태열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수찬 의원 대표발의)

(2005. 9. 8 채수찬·김명주·김양수·김종률·김재원·김혁규·노영민·박기춘·박승환·심재엽·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시종·이인기·최규성·최인기 의원 발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8. 30 김병호·정갑윤·김양수·박승환·김정훈·안홍준·심재엽·이시종·김혁규·채수찬·박형준·김재원·김명주 의원 발의)

地下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5. 7. 19 이시종·김혁규·노영민·이계안·김종률·이목희·김양수·최규성·정갑윤·김병호·최인기·우제창·채수찬·김명주·박승환·심재엽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4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06. 2. 28 대전 서구 갈마동 427-26 갈마외국어학원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이규봉 외 352인으로부터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선총독부 일제 수탈사료관 설립에 관한 청원

(2006. 2. 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호정타워 806호 이태희 외 8인으로부터 김원
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요청서 제출

**국회감사청구사항 중간보고 및 감사기간 연장
요청**

(2006. 2. 28 감사원장 제출)

○보고서 제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6. 2. 28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송파거여신도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질문서
(2건)**

(이상 2건 2006. 2. 28 김태년 의원 제출)

양극화 해소에 관한 질문서

(2006. 3. 2 이계안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검찰의 삼성채권 수사(보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6. 2. 24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